

고용안정장려금(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)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,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방문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6. 25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인 천 북 부 지 청 장



- 1. 건명: 고용안정장려금(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)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
- 2. 근거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관리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공시송달 사유
				회수금액	처분사유	
주식회사 고O	107-88- OOOO O-0	인천시 계양구 이하생략	고용안정장려금(출산육아기_대체인 력지원금) 부당이득 환수 처분	2,761,290원	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	동 서류를 2024. 6. 24. 방문 및 우편발송 등을 통해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공시송달

- 4. 공고 기간: 2024. 6. 26.~ 2024. 7. 11.(15일간)
- 5.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신지윤(☎ 032-540-574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